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10. 13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59호)

다 2006. 10. 24 : 제10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상정,
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류재석)

가 제안이유

-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를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「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의 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 주요내용

-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(제31조제1호아목 신설)

다 관계법령

-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
- 외국인투자촉진법
-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근호)

-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18항(임대료 감면) 및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8항(임대료 감면)에 근거하여 「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를 2004. 12. 20 개정할 당시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인 「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23조의2를 신설 < 「외국인투자촉진법

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> 하였으나

- 2006. 5. 10 조례 제697호로 전부 개정 공포 시행된 「사천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」에는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동 조례 제31조제1호아목을 신설 <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>코자 하는 것으로서
-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행정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여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